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5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600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20451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190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택신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박상현

변론종결 2021. 12. 2.

판결선고 2022. 1.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5190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경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 이루어진 C이 피고에게 620,000,000원을 증여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C이 피고에게 2018. 2. 28. 135,000,000원, 2018. 4. 13. 350,000,000원 합계 485,000,000원을 증여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13행과 14행 사이에 “원고는 미국 국적이고, 피고와 C은 대한민국 국적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미국 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의 준거법은 그러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준거법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이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7행 내지 8행 및 제7쪽 14행의 “D은 2018. 4. 13.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D은 피고에게 2018. 2. 28. 135,000,000원, 2018. 4. 13. 3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5쪽 9행의 “2018. 11. 29.”을 “2018. 11. 28.”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 제6쪽 6행의 “3억 5천만 원에”를 “485,000,000원에”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제6쪽 19행 및 제7쪽 18행의 각 “예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 및 제7쪽 1행, 16행의 각 “2018. 4.경”을 “2018. 2.경부터 2018. 4.경까지”로 고친다.

아. 제1심판결 제7쪽 4행과 5행 사이에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제1예비적 청구의 준거법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620,000,000원 증여계약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이다.”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18. 2. 28. 135,000,000원, 2018. 4. 13. 350,000,000원 합계 48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48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준거법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의 준거법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C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에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이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미화 1,200,000달러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사해행위 존부 판단

먼저 C과 피고 사이에 2018. 2. 28. 13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2018. 4. 13. 3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금전이 이체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액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에게 2018. 2. 28. 135,000,000원, 2018. 4. 13. 3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C이 위와 같은 D의 송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2018. 2. 28. 135,000,000원, 2018. 4. 13. 3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

목록

1. 서울 중구 I 대 102㎡
2. 서울 중구 I (도로명 주소: 서울 중구 J) 지상 연와조 및 세멘벽돌조 샌드위치판넬지
 붕 4층 주택
 1층 72.26㎡
 2층 43.87㎡
 3층 47.47㎡
 4층 43.02㎡
 지하실 29.39㎡. 끝.

